

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
[시행 2023. 6. 11.] [조례 제5030호, 2023. 6. 9., 일부개정]



강원특별자치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2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12.31., 2022.6.30., 2022.10.14.><개정 2023. 6. 9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시설"이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(이하 "공무원교육원"이라 한다)의 강당·강의실 등의 교육시설, 운동장, 생활관, 다목적관 등의 시설,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<개정 2022.10.14.><개정 2023. 6. 9.>
2. "사용자"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3. "사용료"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 ① 공무원교육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22.10.14.>

-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사용의 제한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개·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
2.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
3.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

제5조(사용료)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제6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23. 6. 9.>

-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경감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29.>
 1. 국가기관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2.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3.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직원의 복지 및 생활체육,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<개정 2023. 6. 9.>

제7조(사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: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
2. 공무원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<개정 2022.10.14.>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: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
4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: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
5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: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

제8조(사용자의 협조사항)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2.6.30.>

부칙 <제3816호, 2015. 3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32호, 2017.12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97호(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),2021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20호(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, 2022.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33호(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), 2022.10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③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"를 "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인재개발원"을 "공무원교육원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인재개발원(이하 "인재개발원"이라 한다)"을 "공무원교육원(이하 "공무원교육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

제3조 중 "인재개발원 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인재개발원"을 "공무원교육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공무원교육원"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"인재개발원"을 "공무원교육원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"인재개발원"을 각각 "공무원교육원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"인재개발원장"을 각각 "공무원교육원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뒷면 중 제1호, 제3호 및 제4호 중 "인재개발원"을 각각 "공무원교육원"이라 한다.

㉞ 부터㉠

부칙 <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, 2023. 6. 9.>

null